

<표 2> 전자정부구현과 운영의 원칙

구분	원칙	내용
제 6조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7조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제 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 9조	보유정보공개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	행정기관의 확인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

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